

서울서부지방법원 2024. 5. 31 선고 2024가단205906 판결 [공사대금 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준

담당변호사 김규석

피 고 주식회사 B

소송대리인 C

변 론 종 결 2024. 4. 26.

판 결 선 고 2024. 5. 31.

주 문

- 피고는 원고에게 47,187,882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4. 5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-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-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갑 1 내지 10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, 피고는 2023. 6. 1. 원고에게 서울 강동구 D 주상복합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63,544,800원, 준공기한 2023. 7. 1.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, 원고는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, 피고는 2023. 7. 14. 원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E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목창호 공사를 공사대금 73,700,000원, 준공기한 2023. 8. 31.로 정하여 도급을 주었고, 원고는 그 공사를 모두 완료한 사실,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2024. 4. 4. 기준 47,187,88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7,187,882원과 이에 대하여 2024. 4. 5.(위 기준일 다음날)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%(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이율)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판사 이광열